

하남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 남 시
【도 시 과】

하남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6. 5. .

제 출 자 : 하 남 시 장

1. 개정이유

- 「경관법」 제26조 등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맞추어 규제를 완화하고, 경관지구 내 심의 제외대상 건축물과 소위원회 구성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법령에서 위임한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완화(안 제22조)
- 나. 법령에서 위임한 경관지구 내 심의 제외대상을 명확히 하고, 준주거지역·상업지역 내에서 공동주택의 심의 대상을 명확히 함(안 제23조)
- 다. 경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서면심의 근거 마련(안 제28조제2항)
- 라. 경관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경관법」 제26조, 제28조, 제31조

6.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7. 입법예고 결과

- 가. 입법예고기간 : 2016년 1월 28일 ~ 2월 17일(20일간)
- 나. 의견내용 : 의견없음

8. 부서협의 결과

- 성별영향분석평가(사회복지과) : 원안동의(2016. 1. 20)

9.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

10. 관련부서 : 경기도 건축디자인과

하남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호 중 “5,000제곱미터” 를 “1만제곱미터” 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제2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의한 경관지구 내 경관심의 제외대상은 5층 이하 또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2.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의한 중점관리구역의 건축물은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초과 건축물
3.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서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서 공공주택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등 새로 조성되는 지역의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내에 건축하는 7층 이상인 건축물 및 공동주택(개발이 완료된 신장지구 및 신장2지구는 제외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기존 건축연면적의 30퍼센트 이상으로 증축하는 건축물

제2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경관 및 주거환경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현상공모에 의한 건축설계 작품으로서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건축물
2. 이 조례에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하남시 공공디자인 조례」 제7조 및 제12조에 따른 디자인업무의 협의 및 하남시공공디자인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2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영 제26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위원이 서면 또는 사이버(인터넷 등)상에서 심의하였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 제목 중 “구성 및 운영”을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및 각 호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6조제9항에서”를 “영 제26조제9항에서 경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경관위원회는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경관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관위원회 위원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경관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 ③ 소위원회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은 경관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소위원회의 기능·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리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서명		도시과
입 안 자	부서장 직위·성명	도시과장 오세인
	팀장 직위·성명	도시계획팀장 진동철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진동철 (790-5146)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2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p> <p>1. ~ 2. (생략)</p> <p>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으로서 면적이 <u>5,000제곱미터</u> 이상인 사업(단계별 사업 포함)</p> <p>4. 「전기사업법」에 따른 송전선로로서 전압이 <u>15만4,000볼트 이상인 사업</u></p>	<p>제22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 ----- <u>1만제곱미터</u> ----- -----</p> <p><삭 제></p>
<p>제23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u>경관지구의 건축물로서 3층 이상인 건축물</u></p> <p>2. <u>중점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3층 이상인 건축물</u></p> <p>3.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 건축물로서 <u>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u></p> <p>4.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말한다.</p>	<p>제23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① --- ----- -----.</p> <p>1.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의한 <u>경관지구 내 경관심의 제외대상은 5층 이하 또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u></p> <p>2.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의한 <u>중점관리구역의 건축물은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초과 건축물</u></p> <p>3.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 건축물로서 <u>6층 이상 또는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u></p> <p>4.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서 공공주택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등 새</p>

현행	개정안
<p>가. <u>하남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인 건축물</u></p> <p>나. <u>공공주택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등 새로이 조성되는 지역의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내에 건축하는 5층 이상인 건축물(개발이 완료된 신장지구 및 신장2지구는 제외한다)</u></p> <p><신설></p> <p><신설></p>	<p><u>로 조성되는 지역의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내에 건축하는 7층 이상인 건축물 및 공동주택(개발이 완료된 신장지구 및 신장2지구는 제외한다)</u></p> <p><삭제></p> <p><삭제></p> <p>5. <u>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기존 건축연면적의 30퍼센트 이상으로 증축하는 건축물</u></p> <p>② <u>경관 및 주거환경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u></p> <p>1. <u>현상공모에 의한 건축설계 작품으로서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건축물</u></p> <p>2. <u>이 조례에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하남시 공공디자인조례」 제7조 및 제12조에 따른 디자인업무의 협의 및 하남시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u></p>

현행	개정안
<p>제25조(수당 등) 경관위원회 또는 공동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한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신설></p>	<p>제25조(수당 등) ① ----- ----- ----- ----- ----- -----.</p> <p>② 영 제26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위원이 서면 또는 사이버(인터넷 등)상에서 심의하였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p>
<p>제28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신설></p> <p>영 제26조제9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p>1. ~ 4. (생략)</p>	<p>제28조(경관위원회의 운영)</p> <p>① <u>경관위원회는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u></p> <p>② <u>영 제26조제9항에서 경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u> ----- -----.</p> <p>1. ~ 4. (현행과 같음)</p>
<p><신설></p>	<p>제29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u>경관심의회 효율성을 높이고, 경관위원회 위원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u></p> <p>② <u>소위원회 위원장은 경관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u></p>

현 행	개 정 안
	<p>③ 소위원회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④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은 경관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p> <p>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소위원회 기능·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p>

관련법령 발취

□ 경관법

제26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①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하 이 조에서 "발주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경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도로법」에 따른 도로
2. 「철도건설법」에 따른 철도시설
3.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4.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기준은 환경 관계 법률에 따른 환경성평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청에서 구성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심의 결과를 15일 이내에 해당 경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3.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그 밖에 관할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기준은 환경 관계 법률에 따른 환경성평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우수한 경관을 창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2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준의 완화 여부와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준 완화 요청 및 결정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경관위원회의 구성·운영)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경관법 시행령

제18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등) ①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도로·철도시설·도시철도시설 사업
2. 총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하천시설 사업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회기반시설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하여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5.22.>

1. 심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기본설계(이하 이 호에서 "기본설계"라 한다)를 완료하기 전에 마칠 것. 다만,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경관위원회에서 기본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심의를 마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실시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심의를 마쳐야 한다.

2. 사회기반시설 사업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

가. 도로 사업의 경우: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 소속으로 설치한 경관위원회

나. 철도시설 및 도시철도시설 사업의 경우: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경관위원회

다. 하천 사업의 경우: 「하천법」 제8조에 따른 하천관리청 소속으로 설치한 경관위원회

③ 법 제26조제3항 전단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하 이 항에서 "발주청"이라 한다)에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 등 발주청에 설치된 기존 위원회에서 경관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 건축·도시·조경·환경 등 경관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되어야 하며, 3명 이상이 경관 심의에 참여하도록 할 것

2. 발주청에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는 경우

가. 해당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발주청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할 것. 이 경우 2)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 되어야 한다.

1) 발주청에서 경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2) 건축·도시·조경·토목·교통·환경·문화·농림·디자인·옥외광고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가목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당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제25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5조제1항 중 "경관위원회"는 "발주청에서 구성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로, 제25조제4항 중 "제2항제3호"는 "가목2)"로 본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의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① 법 제2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도에 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건축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으려는 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건축기준 완화적용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는 사항
2. 기준 완화를 요청하는 사유 및 예상효과
3. 건축물의 공사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계획

③ 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절차 및 제2항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적용요청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6조(경관위원회의 운영 등) ①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여, 경관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2. 부위원장
3.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

④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제3항에 따른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시·도지사등은 경관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10일 이내에 회의에 참석한 위원 명단 및 회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공동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규정한 공개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⑥ 경관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⑦ 경관위원회의 경관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 대상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되며, 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위원회의 운영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